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95 | 2025.08.11 (2025.08.04~2025.08.10)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공개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안내서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기관의 자율적 법준수 역량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이를 국민 생활과 산업현장, 정부 행정 전반에 확산시켜 블록체인의 일상화를 실현하고자 ‘2025년 블록체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 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상위 법 조문 개정에 따라 연계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및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였던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및 징수절차 등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국회의 회의에 참석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 국회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언행을 한 경우 처벌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배임죄로 의율하지 않고, 특별배임죄를 삭제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개인 권리행사 방법과 절차, 관제시설 종사자의 자격과 교육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현행 4개인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 2백억원 초과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을,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18%의 세율을 2백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30%로 인하하는 등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삭제함과 동시에,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

‘국내구매사업’과 ‘방산육성사업’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이 우수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탈락할 경우 투자비용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사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철강산업을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여기구의원·이상희의원 등 106인)**」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법률에서 정하면서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의원 등 10인)**」 ,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3인)**」 ,

수입국 다변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적 보완 수단과,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 확대에 필요한 설비투자·공정개선·시험인증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1인)**」 ,

반도체 등의 소부장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협회를 설립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5인)**」 ,

근로감독관의 직무·권한·절차·수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감독관법」의 제정을 통해, 노동관계법령의 집행력을 제고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국가의 책임을 제도화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안(박홍배의원 등 15인)**」 ,

현행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주요 조항 위반 시에는 최대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이번 주 예정된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공개(개인정보보호위원회) 7
- 「2025년 블록체인 지원사업」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0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10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10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11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12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 12
-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3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3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1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 15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15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현승의원 등 14인) 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5인) 16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18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의원 등 10인) 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의원 등 12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의원 등 15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5인) 20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의원 등 11인) 20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의원 등 11인) 2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5인) 21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1
- 스포츠기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7인) 22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7인) 22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여기구의원 · 이상희의원 등 106인) 2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의원 등 10인) 23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 24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3인) 24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1인) 24
-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5인) 25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25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1인) 2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 26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26
- 근로감독관법안(박홍배의원 등 15인) 27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27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0인) 28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5인) 28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29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없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9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노동]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 [동남아시아] 인도 노동환경에서의 사전 통지 의무 및 보증약정서 활용을 통한 노무 인력 이탈 리스크 완화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조세] 2025년 세제개편안 I : 법인과세 분야
- [조세] 2025년 세제개편안 II : 주주과세 분야
- [동남아시아] 베트남 노동 분야 법령 개정 동향
- [중국] 중국 진출기업의 근로계약 종료 시 고려사항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7. 23. - 2025. 8. 5.)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공개 -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 위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시 - 실제 정책·집행 사례에 기반한 생성형 인공지능 생애주기 단계별 법적 고려 사항, 안전성 확보 기준 제시로 현장 불확실성 해소 기대	2025-08-06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공개하였음. 개인정보위는 안내서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기관의 자율적 법준수 역량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음

예를 들어 ChatGPT 등 상용 대규모언어모델(LLM)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Llama 등의 오픈소스 LLM을 미세조정하여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 등이 본 안내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힘

개인정보위가 이번 안내서에서 크게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 세 가지임

첫째,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하는 생애주기를 4단계로 분류하고 단계별로 확인할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음.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실제로 개발·활용되는 방식과 맥락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른 법적 기준과 안전성 확보 기준을 제시하였음

구체적으로 ①목적 설정 단계에서 인공지능 개발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종류·출처별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적법 근거를 다룸 ②전략 수립 단계는 개발 방식을 나누어 유형별 리스크 경감 방안을 안내 ③학습 및 개발 단계는 데이터오염, 탈옥 등 리스크를 고려한 다층적 안전조치를 제시하고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관리 방안도 포함 ④적용 및 관리 단계는 정보주체 권리 보장 등을 중점적으로 다룸 ⑤마지막으로 전체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점을 내재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 이러한 기반에서 기업·기관은 위 과정을 반복하며 시스템을 고도화·개발하는 것이 권장됨

둘째, 이용자 개인정보를 인공지능에 학습할 수 있는 법적 기준 등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이슈들에 대해 개인정보위의 정책 및 집행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음. 개인정보위는 그간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안내자료 마련 ▲사전실태점검 등 집행 사례 ▲규제샌드박스 및 사전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경험을 축적해 왔는데, 이들 경험에서 얻은 구체적 사례에 기반한 법 해석 기준과 안전조치 기준을 안내서에 반영하여 유용성을 높였음

셋째, 인공지능 에이전트, 지식증류, 머신 언러닝 등 생성형 AI 개발·활용과 관련한 최신 기술 동향과 연구 성과 등을 반영하였음. 안내서는 향후 급속한 기술 발전과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임

개인정보위원회는 명확한 안내서를 통해 실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개인정보 보호 관점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프라이버시’와 ‘혁신’ 두 가치가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블록체인 지원사업」 추진

- 국민생활, 산업현장, 정부행정 전반에 걸쳐 블록체인 일상화 촉진
- 배터리 여권 온라인 체제 기반(배터리 여권 플랫폼), 가상병원 서비스, 압표 방지 표 구매 기반 시설(티케팅 인프라) 등
- 총 11개, 124억원 규모의 블록체인 공공·민간분야 지원사업 추진

2025-08-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이를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 정부 행정 전반에 확산시켜 블록체인의 일상화를 실현하고자 ‘2025년 블록체인 지원사업’을 추진함

본 사업은 모바일 신분증, 온라인 주민투표,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디지털 배지 등 국민 체감도와 산업 파급력이 큰 블록체인 기반 혁신서비스를 집중 발굴하고자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총 124억 원 규모로 상반기에 선정된 5개 과제(공공 2개, 민간 3개)와 8.8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들어가는 6개 과제(추경, 민간 6개)를 포함해 총 11개 과제가 추진됨

구분		선정 과제명
공공분야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	1차 (2개)	블록체인 기반 배터리 여권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블록체인 기반 가상병원 서비스
민간분야 (블록체인 기업의 비즈니스 상품화 지원)	1차 (3개)	한국형 문화(K컬처) 블록체인 표 구매 기반시설 (티케팅 기반 시설<티케팅 인프라>)
		블록체인 디지털 유통이력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상호연동 가능한 디지털지갑 공동 온라인 체제 기반(공동플랫폼)
	2차 (6개)	운송분야 탄소배출권 거래지원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상품권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블록체인 기반 참여형 공동체(커뮤니티)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블록체인 기반 외국인 체류행정 지원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블록체인 기반 외국인 신용조회 지원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블록체인·인공 지능 융합 기반 서술·논술형 자동채점 학습지원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 ('25년) 총 11개 과제(124억 원) : 26억 원 집중과제 2개(음영 표시), 8억 원 과제 9개

과기정통부는 이번 블록체인 지원사업은 의료, 유통, 문화 등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만큼, 블록체인의 일상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과 디지털자산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블록체인은 디지털 신뢰의 핵심 기술이자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기반이므로,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블록체인 혁신 기업의 성장과 생태계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8-05 시행

국고금, 기금 및 국유재산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에게 국고금, 기금 및 국유재산을 예치 또는 대여하거나 관리·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종합공사 계약의 최소 금액을 10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과 관련된 사항 등을 이의신청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8-05 시행
---------	--	---------------

초기창업기업 등에 안정적으로 투자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전문개인투자자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벤처기업 등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등의 투자행위와 관련된 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8-07 시행
-----	-----------------------------------	---------------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제한물질 취급신고 제도 및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국내대리인 선임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공포,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소비자 특례의 대상 및 내용을 정하고, 제한물질 제조·수입·판매 등의 신고 면제의 대상과 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보강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면제 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8-07 시행

중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2호, 2024. 2. 6. 공포,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을 각각 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 검토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전에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었던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등을 영업비밀 여부와 무관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료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 등에 필요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08-05 시행

시정조치 대상 건설기계의 멸실 등으로 시정조치의 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그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작자 등이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때 건설기계가 멸실 등으로 등록말소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의무를 완화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의 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라도 그 변경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변경신고 대상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8.06. ~2025.09.15.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관련 사업자 의무를 준수하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5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 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상위 법 조문 개정에 따라 연계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법 제31조의2제1항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위반 시 과태료 2,000만원 부과 (안 별표4 제15호)
- ② 상위 법 조문 개정에 따른 연계된 조항 정비 (안 별표4 전체)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전화: 044-203-2443, 팩스: 044-203-3465)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8.07. ~2025.09.16.
-------	------------------	-----------------------------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자가 노인에게 노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506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조치란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는 경우로 함 (제19조의2 제1항)
 - 이 법 시행 이후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즉시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이전에 설치·교체한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2027년 10월 23일부터 적용함 (제19조의2 제2항)

②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제공자의 경우

- 스마트폰 및 그 밖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함 (제19조의2 제3항)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증기준을 충족하고, 문제 발생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 등을 제공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제19조의2 제4항)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전화: 044-202-3456, 팩스: 044-202-3969)

환경부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8.04.
~2025.09.15.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면서, 해당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및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문의처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전화: 044-201-7183, 팩스: 044-201-7189)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A

2025.08.04.
~2025.09.15.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됨에 따라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였던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및 징수절차 등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 문의처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전화: 044-201-7183, 팩스: 044-201-7189)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8.06.
~2025.09.15.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법률 제20139호, 2024. 1. 23. 공포, 2025.1.24. / 2026.1.24.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의 절차 및 기준과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유통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의 명령 및 공표에 관한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의료제품TF팀](#) (전화: 043-719-3777, 팩스: 043-719-3750)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

2025-08-06 발의

현행법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및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폭력행위 외에도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국회의 위신을 훼손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폭행·협박 외에도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는 점과 「법원조직법」에서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현행법에도 국회의 회의에서 국회의 위신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 회의에 참석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 국회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언행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증인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하여 합리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165조 및 제 166조)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2025-08-04 발의

대법원은 기업경영인이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한 행위가 회사에게 손해를 발생시켜도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임. 그런데 최근 「상법」상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도입함에 따라 이제는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경영진은 배임죄로 처벌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이는 기업 경영을 극도로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 「상법」은 회사 임원진의 합리적 경영상 판단도 특별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특별배임죄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구성요건이 동일하다는 점 등 중복입법과 이중처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새로 도입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발맞추어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배임죄로 의율하지 않고, 특별배임죄를 삭제하는 등 중복된 법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2025-08-05 발의

국민 생활 곳곳에서 범죄예방, 시설안전, 교통단속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드론·로봇·자율주행차 등 영상정보 처리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신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이 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법률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일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 규율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특히, 최근에는 로봇이나 자동차 등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에 있어서 실제 주행영상을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 또는 가명처리한 영상을 통해서만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기술의 발전과 첨단 산업의 육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에게 열람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정작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CCTV 등으로 촬영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영상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실제로 2021년 4월에 발생한 한강공원 대학생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이후에야 유가족이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었던 사례도 있었음

한편, 2024년말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총 221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면서 약 65만대 규모의 CCTV를 관제하고 있고, 민간 분야에서도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CCTV 관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관제시설의 구축·운영 기준이나 관제요원의 자격 등에 관한 법적 규율체계가 없어 스토킹범죄자나 아동성범죄자 등이 CCTV를 관제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을 제한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신산업 발전을 위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개인 권리행사 방법과 절차, 관제시설 종사자의 자격과 교육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산업 혁신을 위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으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5인)

2025-08-04 발의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등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으로 그 기한의 연장이 필요함

이에 해당 특례의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77조의3)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2025-08-04 발의

최근 미국발 관세협상 기조 및 미중 갈등의 지속으로, 세계 주요국가들의 자국기업 보호정책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국제경제 흐름 속에서 각 국은 치열한 기업 유치 및 자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 활성화 등 자국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기업들의 투자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법인세 인하 노력을 경주하는 세계적 흐름이 거세지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p인하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 법인세율인 23.5%에 비해 높은 수준임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해외 자본 유출을 방지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인세 인하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세계 주요국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이 유지되고, 경직된 자본시장 과세 체제가 운영되면서, 기업 투자 의욕이 낮아지고 해외 자본 유출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현행 4개인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 2백억원 초과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을,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18%의 세율을 2백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함 (안 제55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2025-08-05 발의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50%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평가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20%를 가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그런데, 최고 세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세 부담이 적용되고 있어, 납세자의 세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배우자 간 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 과세가 이뤄지는 경우 생존 배우자의 노후 안정성과 유족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혼인 공동체 내에서 이미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다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30%로 인하하는 등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삭제함과 동시에,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려는 것임 (안 제26조 및 제63조제3항 삭제, 제12조제8호 및 제46조제11호 신설, 제19조 및 제53조제1호 삭제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025-08-05 발의

지난 2022년 말 국회는 일·가정 양립의 지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키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한시적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으나(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 공제), 2025년 12월 31일 공제가 만료되는 상황임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말 기준 육아휴직자수는 99,719명에 불과했으나 2025년 6월말 기준 육아휴직자수는 134,407명으로 3분의 1 이상 증가했음. 특히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육아휴직자수도 같은 기간 10,628명에서 15,077명으로 증가하는 등, 육아휴직 사용 장려 문화가 발돋움해나아가는 과정에 있음. 그러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에서 2024년 0.75명으로 감소하는 등, 여전히 낮은 상황임

이에 육아휴직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계속을 위하여 육아휴직자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8제5항)

기획재정위원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2025-08-05 발의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두어 담배 판매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담배 판매와 관련하여 일부 소매인들이 법적 기준이나 판매 질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확산하여 기존 법령이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담배 소매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재하여 담배 판매 책임 및 준법 행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이를 방지할 경우 담배 소매인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담배 판매 시장의 교란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연초의 앞뿐만 아니라 뿌리, 줄기 등 담배의 원료로 사용되는 연초의 다른 부분까지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담배판매인이 소매인 지정 후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담배 판매 질서를 강화하도록 함 (안 제2조제1호 및 제17조의2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2025-08-05 발의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연구 및 기술 개발 분야에서의 국내 인재 유출이 지속되어 큰 국가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국외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감면기준을 완화하고, 감면기간 및 감면율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기준을 완화하고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며, 감면기간을 취업일부터 20년이 되는 날로 확대하고, 소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내국인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연구·기술 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3)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5인)

2025-08-07 발의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의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국가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임을 고려할 때 현행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에 힘쓰는 기업에 대해서도 해당 감면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기술육성주체도 포함하도록 하고, 기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일몰기한도 5년 연장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안 제12조의2)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5인)

2025-08-08 발의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13조부터 제13조의4까지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

2025-08-06 발의

현행에 따라 방산업체는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후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7일 이내에 제출하고 있음. 하지만,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만 2주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법적 기한 준수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수출거래 현황을 7일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업체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자 함 (안 제57조제5항)

국방위원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

2025-08-06 발의

현행상 '구매사업' 추진 시,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은 사업 참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이 보상되지 않음. 또한 '방산 육성사업'의 경우에도 종합점수가 합격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최종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발생하는 부담이 존재함. 이러한 문제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국내구매사업’과 ‘방산육성사업’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이 우수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탈락할 경우 투자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 기술력 있는 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을 유도하고자 함 (안 제10조의3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5인)

2025-08-06 발의

최근 소셜미디어(SNS)와 영상 플랫폼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함으로써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의 가공할 만한 전파 속도와 광범위한 확산 범위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자행되는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야기하고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력의 한계와 긴 소송 기간 등으로 인해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많고, 가해자의 행위 동기인 ‘수익 창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하여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불법행위 자체를 ‘수익이 될 수 없는 행위’로 만듦으로써 행위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피해자에게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민사적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025-08-07 발의

최근 스마트홈과 홈네트워크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기기 간 연동성 및 호환성 보장 등의 기술적 과제와 함께, 홈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해킹, 시스템 오작동,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공 품질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임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용역업자가 수행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소방 등 타 분야와 달리 설계 업무 수행자의 역량, 경험,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부실 설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사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설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안 제7조제2항 및 제76조제2호의2 신설 등)

문화체육관광
위원회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7인)

2025-08-05 발의

오늘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기술과 각종 스마트기기의 등장 등 4차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있으며, 이는 스포츠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스포츠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스포츠 현장의 변화 속도는 기술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스포츠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조정 등을 규정한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스포츠지능정보화에 관한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범국가적 추진 체계를 정립하여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
위원회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7인)

2025-08-07 발의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기본계획의 수립,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이스포츠대회의 육성·지원 등 이스포츠의 진흥 및 이스포츠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스포츠의 진흥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 명확하지 않아 이스포츠 진흥 사업이 민간 중심의 단편적인 행사로 운영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업에 의존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스포츠 및 이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육성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이스포츠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이스포츠 선수의 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이스포츠를 진흥하고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여기구의원·이상희의원 등 106인)

2025-08-04 발의

철강산업은 모든 제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기반산업으로서 특히 첨단 모빌리티, 수소 등 재생에너지, 우주 항공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국가·경제 안보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임. 국내 철강산업은 1970년 「철강공업육성법」 제정 이후 고로 기술 등의 도입을 통해 급속 성장하였으나, 현재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함께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저가 수입재 범람, 미국 등 주요 철강 수입국의 관세 조치, EU CBAM 등 각종 탄소 규제 속에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

2023년 기준 철강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17.8%로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이자 필수 조건임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화 기술 혁신, 청정수소 및 무탄소 전력 공급 등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지만, 막대한 비용 소요 및 각종 규제조치 등으로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임. 이와 관련하여 이미 EU,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자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하여 별도 기금 마련, 보조금 지급, 세액공제, 규제 간소화 등 각종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향후 국내 철강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지속적인 저가 수입재 범람 등으로 국내 철강 공급기반이 약화될 경우 철강산업은 물론, 국내산업의 생태계 전반이 타격을 입게 되고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경제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

이에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철강산업을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철승의원 등 10인)

2025-08-05 발의

현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펀드는 한국벤처투자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벤처투자모태조합이 자조합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짐

법 제70조제4항은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대통령령은 이를 30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벤처투자모태조합은 2035년에 종료될 예정으로, 자조합을 통하여 인공지능 등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모태조합과 자조합의 존속기간 역전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법률에서 정하면서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여 모태조합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70조제4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

2025-08-06 발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발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 대규모 민간투자과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 EU는 핵심 산업과 인공지능 기술 융합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채택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우수한 제조업 기술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산업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할 필요가 있으나, 인공지능 도입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 전문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아직 산업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도는 높지 않은 실정임

이에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시행,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3
인)

2025-08-06 발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요국은 국가의 안전 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1인)

2025-08-06 발의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특정 국가의 저가공세 심화로 인해 국내 기업의 생산 및 조달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이차전지 산업은 주요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성과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수입국 다변화, 공동구매 등 행정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업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물류비 보전, 재정지원, 세제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 수단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기존 제22조에서 규정한 수입국 다변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적 보완 수단과,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 확대에 필요한 설비투자 · 공정개선 · 시험인증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급망의 자립성과 산업경쟁력을 함께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5인)

2025-08-07 발의

반도체는 대한민국 경제 및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국가 경제와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특히 반도체 소부장(소재 · 부품 · 장비) 산업은 반도체 공급망의 근간을 이루며, 고도화된 기술과 안정적인 공급이 반도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분야임

하지만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치열한 기술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될 여지가 있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생산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개별 소부장 기업이 이러한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관련 자원과 역량에 한계가 있는 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부장 협회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반도체 등의 소부장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협회를 설립하여, 국내 반도체 등 소부장 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더 나아가 국내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적 차원의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2025-08-04 발의

현행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르면 위생용품을 소분(완제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재포장)만 하여 유통 ·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샴푸, 섬유유연제 등과 같은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덜어가는 리필형 매장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의 행위로 간주되어 영업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므로,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 판매업을 신설하여 사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안 제2조, 제3조, 제7조)

또한, 회수 대상인 위생용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회수 초기단계부터 영업자에 공표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회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한 처분 감면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회수 · 폐기제도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안 제16조, 제23조)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1인)

2025-08-07 발의

현행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허가와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미리 갖추어 허가 또는 인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준수 및 유지 여부에 대하여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심사기관을 지정하여 적합성에 관한 심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적합한 경우에는 적합인정서를 발행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적합인정서의 발급 행위 및 주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심사 및 처분 등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는 한편,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시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

2025-08-04 발의

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임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노동이사제 의무도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어 제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이로 인해 공단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의 실질적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안 제16조제3항)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2025-08-05 발의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들은 관행적인 단기근로계약의 반복,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이 사용자 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불투명한 고용승계로 인해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한편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으로 작성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용역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 (안 제23조의2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감독관법안(박홍배의원 등 15인)

2025-08-05 발의

노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의 기초이며, 근로조건의 기준은 사회정의 실현의 출발점임. 그러나 노동시장은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 간접고용 등의 확산 속에서 사용자 중심의 구조로 고착되며, 노동자의 권익이 구조적으로 침해되는 상황에 직면함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근로감독 제도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개별 노동관계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 절차, 집행 기준에 대한 체계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임. 이로 인해 근로감독 행정은 지역과 업종별 편차가 크고, 감독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 확보에 실패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 특히 복잡한 고용 구조 하에서 권리구제의 시기성과 실효성이 현저히 후퇴하는 양상임

또한, 근로감독관의 수사권 행사와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체불임금 등 노동환경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 체계 또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임. 근로감독관 개개인의 판단과 해석에 의존하는 구조는 법 집행의 신뢰를 저해하고, 현장 대응의 표준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로 이어짐

이에 **근로감독관의 직무·권한·절차·수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감독관법」의 제정을 통해, 노동관계법령의 집행력을 제고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국가의 책임을 제도와화하고자 함**

환경노동위원회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2025-08-06 발의

현행법은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오피스텔·원룸 등의 주거형태는 포함되지 않아 해당 주거형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분쟁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이나 조정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오피스텔·원룸 등의 주거형태에 대해서도 층간소음기준을 정하고,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 지원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의 2)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0인)

2025-08-08 발의

산업현장에서는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중대 재해 및 산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와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사업주가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고의·중대한 과실로 노동자와 노무제공자 등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기존의 손해배상책임만으로는 예방과 억지에 한계가 있을 것임

이에 현행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주요 조항 위반 시에는 최대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166조의3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5인)

2025-08-05 발의

현행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나,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은 30만 제곱미터 이하) 해제 권한의 경우 대통령령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은 30만제곱미터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도지사의 권한임에도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위한 권한위임의 취지가 퇴색되는 측면이 있으며, 협의 절차로 인한 시간·비용 등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 위임 사무처리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규정을 삭제하여 시·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분권의 취지를 실현하려는 것임 (제29조제3항 삭제)

국토교통위원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2025-08-06 발의

최근 오피스텔·원룸 등 비공동주택의 주거 형태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심화되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예방 및 분쟁 조정 절차를 두고 있는 반면, 비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비공동주택의 주거 형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이나 분쟁 조정 수단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분소유자 또는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 하여금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구분소유자등은 관리인이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구분소유자등에게 층간소음의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오피스텔·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5조제5항 및 제46조의2 신설)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없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8/11(월) 10:00	청주 축구장·야구장 스포츠컴플렉스 건립 토론회	이연희·이광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8/11(월) 14:00	한미 관세 협상 의미와 평가 긴급 세미나	박성훈·임이자 의원실 등	국회본관 245호
	8/12(화) 09:30	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해법 모색, 주4일제 :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2년 결과와 합의	이수진·이학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8/12(화) 10:00	유료방송시장 위기 심화에 따른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 : 한국방송학회 토론회	최형두·김우영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8/12(화) 14:00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김영환 의원실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8/13(수) 10:00	일상화된 재해, 보험 산업의 기후위험과 책임 : 기후금융 연속세미나 #01	신장식·박상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8/14(목) 10:00	해양강국 대한민국, 1國 1해양대 초광역 인재로 도약	어기구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자료집 등	8/11(월)	「팩트북」 제118호(2025-4호) 발간	국회도서관	
	8/12(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78호(2025-15)호 발간		
	8/13(수)	「금주의 서평」 제741호(2025-32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9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8/4(월)	「Data+」 제15호(2025-15호) 발간	국회도서관	
	8/6(수)	「Data&Law」 제33호(2025-8호) 발간		
	8/6(수)	「금주의 서평」 제740호(2025-31호) 발간		
	8/5(화)	「이슈와 논점」 제2396호	국회입법조사처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8/4(월)	노동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8/5(화)	동남아시아	인도 노동환경에서의 사전 통지 의무 및 보증약정서 활용을 통한 노무 인력 이탈 리스크 완화
8/5(화)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8/5(화)	조세	2025년 세제개편안 I : 법인과세 분야
8/6(수)	조세	2025년 세제개편안 II : 주주과세 분야
8/6(수)	동남아시아	베트남 노동 분야 법령 개정 동향
8/6(수)	중국	중국 진출기업의 근로계약 종료 시 고려사항
8/8(금)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7. 23. - 2025. 8. 5.)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